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검 토 보 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
■ 정 부 제 출(의안번호 제221266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안의 개요	3
2.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	6
[참 고]	19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5. 9. 3.

다. 회 부 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채 무 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채 권 자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

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라. 보 증 액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아. 상환재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자. 자금사용계획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차. 발행시기 : 2026년 중

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IV. 검토의견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의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제1항¹⁾은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중 2026년도 발행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²⁾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도입·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

1) 「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및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³⁾을 지원함.

2024년에는 총 2조 1,119억원, 2025년에는 9월 말까지 총 4조 4,166억원의 자금지원이 있어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총 6조 5,285억원 수준임.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유형]

- | |
|--|
| <p>①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국산 부품·소재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국산 부품·소재 수요 견인을 위해 국산 부품·소재 구매기업에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 방위산업 부문의 경우 제작업체의 원재료 구매 및 방산업체의 최종재 구매를 연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국내 생산능력 확보 위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 <p>② (해외자원 확보) 해외 광산에 대한 투자자금 및 희토류 등 원재료 구매자금 제공으로 안정적 자원 확보 지원</p> <p>③ (금융 사각지대 지원) 기존 상업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던 금융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지원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신용기업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기금지원- 자원 재활용, 식량, 필수 산업원료 등의 안정적 확보 지원 |
|--|

자료: 기획재정부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기금 집행을 승인하면 승인된 금액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하고, 조달된 재원을 통해 기금이 집행되는 구조를 지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5일자로 출범하였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규모는 2024년 4,000억원,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3조 800억원임.

2.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용 부담 없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해당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⁴⁾. 한국수출입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본 동의안에서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2026년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지급보증(발행한도) 규모는 전년(2025년)과 동일하게 최대 원화기준 10조원(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을 적용) 수준임.

[연도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한도 및 발행실적]

(단위: 억원)

연 도	2024	2025(9월말 기준)	2026(안)
발행한도 (보증상한)	50,000	100,000	100,000
발행실적	4,000	30,800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

4) 추가적으로, 해당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BIS 하락 등의 부담을 지지 않고도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6년 10조원 한도의 채권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는 2026년 신규 자금소요 9조 2,572억원 및 202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신규 채권 차환을 위한 3조 8,580억원 등 사업비에서 대출 원리금 회수로 조달할 수 있는 3조 5,990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

[2026년도 자금소요(9조 2,572억원) 산출근거]

- ① 既 승인사업의 '26년 예상 집행액(3.3조원), ② '26년 승인사업의 '26년 예상 집행액(5.9조원) 고려 시, **'26년 집행실적은 9.3조원으로 추산**
 ① '24년 승인사업(2.1조원)의 '26년 집행계획(5,022억원) 및 '25년 승인사업(7조원)의 '26년 집행수요 추정(28,110억원)을 합산하여 기 승인사업의 '26년 집행전망치를 총 3.3조원 산정

< '24년 및 '25년 승인사업의 '26년 예상 집행액 >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승인분	'25년 승인분(전망)	계
구매자금	4,738	17,991	22,729
시설자금	285	8,884	9,128
투자자금*	-	1,275	1,275
총 계	5,022	28,110	33,132

* 투자자금 및 직·간접 투자 포함

- ② '25년 승인된 금액의 연내 집행율(57% 전망) 등을 감안하여 **'26년 승인금액(10조원)의 연내 집행규모를 5.9조원으로 추정**

< '26 승인사업의 '26년 예상 집행액 > (단위 : 억원)

구 분	'26년 승인분(전망)
구매자금	40,294
시설자금	17,599
투자자금	1,546
총 계	59,44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

(단위 :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자금집행 (A)	9.3	10.1	10.7	11.3	11.7	12.2
채권상환 (B)	3.9	6.7	8.0	9.1	10.2	10.2
자금회수 (C)	3.6	5.9	7.4	9.0	10.2	11.1
필요자금 (D)=(A)+(B)-(C)	9.5	10.9	11.2	11.4	11.6	11.3
유동성 대응 자금 ¹⁾ (E)	0.5	0.5	0.5	0.5	0.5	0.5
채권한도(F)=(D)+(E)	10.0	11.4	11.7	11.9	12.1	11.8

자료 : 기획재정부

1)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유동성 확보

[2026년도 채권 발행예정액 상세산출근거]

(단위: 억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비고
지출	신규 자금소요(A)	92,572	'26년 대출 및 투자 집행분
	채권상환(B)	38,580	'25년 발행분 차환(2.8조원) '26년 발행분 연내 차환(1조원)
	합 계	131,152	-
수입	대출 원리금 회수(C)	35,990	-
필요자금 (D)=(A)+(B)-(C)		95,162	통화별 발행(예정)금액 · (원화) 80,888 (85%) · (외화) 14,274 (15%)
유동성 대응자금(E)		5,000	-
채권발행 예정액 (F)=(D)+(E)		100,1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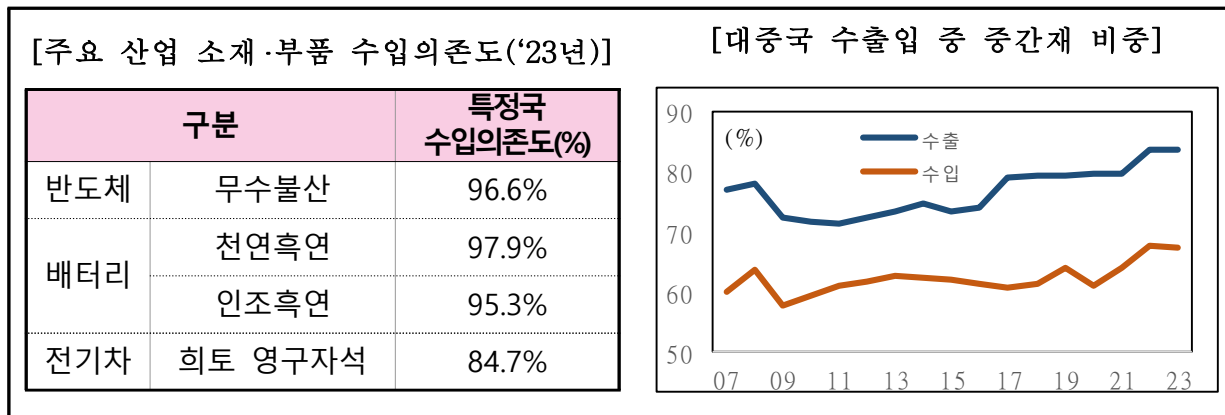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재 확보, 자국 산업기반 강화, 기술 우위 확보·유지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자원 부족으로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으며⁵⁾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 수입의존도(% , '20년):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비철금속) 99.3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주요 전략산업 소재·부품 특정국 의존도 관련 현황]



자료 : 관계부처합동,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2024.12.)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만큼,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12월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하여 공급망안정화 기금 공급규모를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첨단산업·자원안보·필수재·물류 등 공급망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참고로, 지난 9월 수출입은행 및 금융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기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외에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자금여력이 늘어나고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및 성과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급망기금운용심의회·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출,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자원안보·국민경제필수재·물류인프라” 4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⁶⁾

[공급망안정화기금 4대 부문 - 12대 분야]

4대 부문 - 12대 분야											
①첨단전략산업				②자원안보		③경제필수재			④물류 인프라		
이 차 전 지	반 도 체	디 스 플 레이	제 약 바 이 오	핵심 광물	에 너 지	식 량	산 업 원 료	기 계 장 비	운 송	저장 비축	항 만 인 프 라

자료: 기획재정부

6)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2024.10.)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부문]

구분	유관 품목·서비스(예시)	
① 첨단 전략 산업	이차전지	양극재(전구체, 황산니켈, 수산화리튬), 희토 영구자석, 전해액, 분리막, 파우치
	반도체·디스플레이	희귀가스(크세논, 네온, 크립톤), 불화수소, 무수불산, 갈륨, 블링크 마스크
	제약·바이오	바이오배지, 레진, 아세노아미노펜
② 자원 안보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수소
③ 국민경제 필수재	식량	밀, 대두, 옥수수, 팜유
	산업원료·장비	요소수, 비료, 가스 터빈
④ 물류 인프라·서비스	항만·터미널, 저장·비축·유통시설 해운·항공 서비스(운송 인프라) 및 유지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 금융지원 안내 책자(2024.9.)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5년 12월부터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예정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운용하게 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첨단전략산업’ 부문과 지원 목적·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관련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당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중복 문제가 지적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 및 운영시 핵심광물 공급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게 지원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가 있음.

특히, 전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금액 중 첨단전략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의 경우 62.5%, 2025년 1월~9월의 경우에도 35.5% 등 상당한 수준이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2항⁷⁾에 규정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이와 같이 상당 부분 지원하는 것은 동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4년 및 20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4. 9~12월			2025. 1~9월		
			대출	투자	합계	대출	투자	합계
지원 분야 별	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3,500	-	3,500	9,628	-	9,628
		반도체	8,700	1,000	9,700	6,050	-	6,050
		소계	12,200	1,000	13,200	15,678	-	15,678
		(비중)	(60.6%)	(100%)	(62.5%)	(35.7%)	-	(35.5%)
	자원안보	핵심광물	3,990	-	3,990	1,820	-	1,820
		에너지	-	-	0	16,358	-	16,358
	국민경제 필수재	식량	810	-	810	6,100	-	6,100
		산업원료	3,114	-	3,114	1,869	-	1,869
		기계장비	5	-	5	1,800	-	1,800
	물류 인프라	운송	-	-	-	342	200	542
합 계			20,119	1,000	21,119	43,966	200	44,166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9월 최초 출범

자료: 기획재정부

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따라서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지원을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동 부문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6년도 10조원의 발행한도를 일부 감액하여 수정의결 함으로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유사한 기금과 지원대상 등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상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해외기업이나 해외시설 투자 등에도 지원이 가능한 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발행한도 축소보다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의 중복 해소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이를 위해 정부는 비효율적 중복 지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간 업무조율협의를 체결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공동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둘째, 대기업 위주 지원의 적절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금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의 경우 87.9%, 2025년 1월~9월 경우에도 82.6% 수준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대출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 및 20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4. 9~12월			2025. 1~9월		
		대출	투자	합계	대출	투자	합계
기업 규모별	대기업 (비중)	18,560 (92.3%)	-	18,560 (87.9%)	36,482 (83.0%)	-	36,482 (82.6%)
	중견기업	800	-	800	6,483	-	6,483
	중소기업	759	-	759	1,002	-	1,002
	기타	-	1,000	1,000	-	200	200
합 계		20,119	1,000	21,119	43,966	200	44,166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9월 최초 출범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책금융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민간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대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의 지나친 확대는 해당 산업에의 민간자본 투입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애로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정책금융의 대폭적인 확대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기관별 금융지원(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산업은행	138.2	153.8	169.7	190.1	191.5	203.4
기업은행	211.7	239.0	260.7	280.9	296.7	309.2
수출입은행	69.9	71.9	77.4	86.1	83.9	88.3
신용보증기금	47.2	55.0	59.1	61.4	61.8	62.5
기술보증기금	21.8	25.4	26.3	26.5	27.9	28.5
합계	488.8	545.1	593.2	645.0	661.8	691.9

자료 : 금융위원회

셋째, 상당한 물량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추가로 발행될 경우 채권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물량의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추가로 발행될 경우 채권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	197.6	207.1 (+9.5)	231.1 (+24.0)
- 순증용	80.0	89.5 (+9.5)	113.5 (+24.0)
- 차환용	117.5	117.5	117.5

자료 : 기획재정부

2026년 10조원 규모의 기금채가 시장에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 공급량 증대 및 시장불확실성 증가로 시장금리 상승(기존 채권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보증동의 기금채가 발행되는 경우 회사채와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어 국내 기업들이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2025년 9월의 국고채 응찰률은 264%로 2023년(271%), 2024년(321%) 대비 하락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보증동

의 기금채가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 동 채권이 국고채 대체 역할을 하여 국고채 수요가 일부 이동할 수도 있으며, 국고채 응찰률이 하락하고 조달 금리가 상승하여 정부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정부는 채권 발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고채 및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금채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국가 전체의 보증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⁹⁾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고,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2025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

8)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025.10.)

9)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무관리계획' 상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보증채무 잔액 전망을 살펴 보면, 2025년은 16.7조원 수준이나, 2029년은 80.5조원으로 국가 전체의 보증채무 잔액 규모가 GDP 대비 2.6%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5~'29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25~'29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 보증채무	16.7	39.0	54.5	68.6	80.5
(GDP 대비 ¹⁾ , %)	(0.6)	(1.4)	(1.9)	(2.3)	(2.6)
- 한국장학재단채권	11.0	12.2	13.4	14.5	15.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2	10.3	14.9	18.7	21.4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	16.5	26.2	35.4	43.5

자료 :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2025.9. / 기획재정부)

1)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이는 20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새로이 국가보증채무로 포함되어 반영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까지 새로이 국가보증채무로 포함되면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것으로, 이전 연도의 국가보증채무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¹⁰⁾

10)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이 반영되기 이전인 2024년 9월에 제출된 2024~202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기획재정부)에서는 2028년 보증채무 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38.5조원 수준(GDP 대비 1.3%)수준으로 전망하였음.

['24~'28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24~'28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 보증채무	15.8	26.5	32.4	35.9	38.5
(GDP 대비, %)	(0.6)	(1.0)	(1.2)	(1.2)	(1.3)
- 한국장학재단채권	10.6	11.5	12.1	12.7	13.2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2	-	-	-	-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5.0	15.0	20.3	23.2	25.3

따라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 채권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증채무의 총량도 함께 살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적
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 발행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
으로 관리하는 점을 국가보증채무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보증
채무 규모 및 보증 대상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3

가. 기금설치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사업의 내용

□ (사업개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원분야 :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확보, 도입 및 공급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 경제안보품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4항에 의거 지정된 품목

** 경제안보서비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5항에 의거 지정된 서비스 및 기반시설

○ 지원대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지원방식 : 대출, 보증, 출자 등

□ (기금 재원조성 규모 추산)

- ('26년 예상 자금승인 수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확대개편('25.8월), 선도사업자 추가선정('25.下, '26년), 공급망 안정화기금의 인지도 제고 등 고려시 '26년 자금승인 수요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4.12월)을 통해 연간 10조원 규모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계획(3년간 30조원)

- ('26년 예상 집행실적) 既 승인사업의 '26년 예상 집행액(3.3조원), '26년 승인사업의 '26년 예상 집행액(5.9조원) 고려시, '26년 집행실적은 9.3조원으로 추산
- ('26년 필요 국가보증 규모) '26년 예상 집행실적, 유동성 대응자금(0.5조원) 등 고려시 국가보증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

<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실수요 기반) >

(단위 :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자금집행 (A)	9.3	10.1	10.7	11.3	11.7	12.2
자금회수 (B)	3.6	5.9	7.4	9.0	10.2	11.1
채권상환 (C)	3.9	6.7	8.0	9.1	10.2	10.2
필요자금 (D)=(A)-(B)+(C)	9.5	10.9	11.2	11.4	11.6	11.3
유동성 대응 자금*(E)	0.5	0.5	0.5	0.5	0.5	0.5
채권 한도(F)=(D)+(E)	10.0	11.4	11.7	11.9	12.1	11.8

*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유동성 확보

- '26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조원 한도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억원)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100,000
차입금	미 정	-
계		100,000

□ **(지원조건)**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조건
부과 가능

-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 포함)
- 자기주식의 취득
-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성과보수 포함) 인상 등

* 이익의 배당(주식배당 또는 현물배당 포함),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성과보수 포함)의 인상 등

다. 지원자금 회수 계획

□ 채권만기 상환일정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만기 지정

□ 투명한 기금지원 절차 준수, 기금 지원 단계별 전문적·객관적 사업심사, 지원 사업의 면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자금회수 도모

□ ①지원대상 사업확인, ②수은의 금융심사,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최종심의 등 단계별 객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지원절차를 거쳐 기금의 지원여부 결정

- (사업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 확인

- (금융심사) 수은의 금융 심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사업타당성*, 상환능력** 등 금융지원 타당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의 사업 이행능력, 영업기반 및 사업전망 등

** 차주(연대보증인) 및 사업주 등의 신용상태, 상환 계획 등

- (최종심의) 정부 및 국회 등 추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투명한 심의를 통해 기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 예정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2인, 정부 추천 4인(기재부·외교부·산업부·금융위 각 1인), 수은 임직원 중 1인으로 총 7인 구성

※ '25.9월 현재 국회 추천 1인 사임에 따라 총 6인 구성 및 운영중

-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회에 사후보고 및 추인 필요

□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한 리스크 부문별 관리를 실시하고, 면밀한 사후관리로 기금 지원사업 부실화 가능성 최소화 및 대출원리금 적기 회수 도모

○ (리스크관리) 수은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활용, 기금의 각 부문별 리스크(신용·환·금리·유동성·운영) 관리체계 운영 중

- (신용리스크) 거래상대방의 부도,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 이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위험
- (환리스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 자산·부채의 손실 발생 위험
- (금리리스크) 금리 변동으로 인한 금리부 자산/부채의 손실 발생 위험
- (유동성리스크) 자금수급 미스매치, 예기치 않은 자금부족 등으로 만기 도래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없는 위험

○ (사후관리) 자금집행 후에는 수은의 사후관리 노하우 및 자원을 활용하여 사전에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대출원리금 회수 도모

- 기금 포트폴리오의 기업·계열·산업·국가별 편중 방지 위하여 각종 신용여신한도 관리, 한도 소진율이 높은 부문에 대한 리스크 점검 등 실시

- 자금용도 확인, 차주 신용도 정기점검, 부실사업 관리 등 실시